

Question

A·B·C 3사가 공동도급(주간사가 A사이므로 이하 A사라 함)으로 시행중인 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와 관계없이(도급공사가 아닌) 발주자와 발코니 샷시공사를 위해 A사와 일정기간 동안 현장에 들어와서 샷시시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샷시시공업체가 A사 관할 현장에서 샷시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A사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그 근거와 공동도급사인 B사가 제2의 샷시시공업체를 데리고 오면 모든 책임은 B사가 지겠다고 A사와 약속한 다음, 제2의 샷시시공업체가 A사 관할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B사가 대신 질 수 있는 것인지(A·B사 관할의 구분이 확실한 현장) 문의드립니다.

Answer

1. 귀 질의의 내용 및 유선 확인결과, 당해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후 공동도급사 간에 내부협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공기로 약정하고, 또한 샷시업체는 발주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공동도급사중 하나인 A사의 하청업체가 아님)한 상태에서 A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샷시공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발주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샷시업체가 A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한다면 당해 샷시공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 또한, 샷시업체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샷시공사의 작업장소를 벗어나 A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시설물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를 당하게 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은 당해 시설물 등에 안전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5조의2 제1항”에 의거하면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산안법 제32조 제4항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안법 시행규칙 제33조 2의 안전보건교육의 면제와 관련하여 제1항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시에는 일부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 및 적용 대상 그리고 각 교육에 대한 일부 면제 사항은 어디까지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A 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교통재해·질병 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연간 2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말하는 것이며,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항(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에 의한 적용대상 및 일부 면제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Q uestion

대형건설 공사의 특성상 여러 작업공구별로 변압기, 분전함 및 후광등 등 공사용 전기 가설 시설물에 대해 건설분야 전기관리자와 관련 기술자 및 작업반장은 주로 해당 공사 공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임하여 동 가설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의 시정과 동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 기사 또는 기능사를 안전관리팀의 요원으로 채용하여 안전관리팀장의 조직인 안전관리자로 채용하여도 무난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은 약 1800억이고 전담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재 3명으로써 산안법상의 도급금액상의 유자격 기준 인원은 충족하고 있으나 작업자들의 전기 시설물 사용 및 관리의 안전을 위해 전기분야의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분야 전담 안전관리자로 추가 채용할 때 동 채용될 자가 안전관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 및 직무 등은 동법 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의거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전기기사 또는 기능사 유자격자는 동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기관련 유자격자는 현장 안전요원으로서 채용은 가능하나 안전관리자로는 추가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